

오산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

전문개정 2002년 4월 29일 규칙 제492호
개정 2003년 4월 8일 규칙 제512호
개정 2007년 11월 30일 규칙 제615호
(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
오산시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의 정비에
관한 규칙)
일부개정 2011년 12월 20일 규칙 제702호
(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 2022년 1월 13일 규칙 제917호
(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
오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와 동
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,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
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 11. 30, 2022. 1. 13>

제2조(권한대행) ① 시장이 결원 또는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법에 의
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때에는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오산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
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
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, 관·과장순으로 그 권한을 대
행한다. <개정 2011. 12. 20>

제3조(법정대리) ① 시장이 출장·휴가 등 일시적 사유(이하 “사고”라 한다)로 직무를
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,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
국장, 관·과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. <개정 2011. 12. 20>

③ 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
에 의한 과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④ 관·과·소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관·과·

소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. <개정 2011. 12. 20>

⑤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4조(지정대리)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. <개정 2003. 4. 8>

② 관 및 과·소·동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관 및 과·소·동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. <개정 2003. 4. 8, 2011. 12. 20>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,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신설 2003. 4. 8>

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문서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 4. 8>

제5조(책임)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4. 8 규칙 제512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. 11. 30 규칙 제615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12. 20 규칙 제702호,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⑬ 까지 생략

⑭ 「오산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」 제2조제3항 중 “국장, 담당관·과장”을 “국장,

관·과장”으로 하며, 제3조제2항 중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관·과장”으로 하며, 제3조제4항 중 “담당관·과장·소장”을 “관·과·소장”으로 하며, “담당관실·과·사업소”을 “관·과·소”로 하며, 제4조제2항 중 “담당관실 및 과·소·동”을 “관 및 과·소·동”으로 “담당관실 및 과·소·동장”을 “관 및 과·소·동장”으로 하며, 별지 제1호 서식 중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관·과장”으로 한다.

⑮ 부터 ⑳ 까지 생략

부칙 <2022. 1. 13 규칙 제917호,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
오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>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1. 12. 20>

직 무 대 리 명 령 서

- | | | |
|----------|---|----|
| 1. 피대리자 | 직 | 성명 |
| 2. 대 리 자 | 직 | 성명 |
| 3. 대리기간 | | |

위와 같이 대리를 명함.

년 월 일

오 산 시 장 (인)

○ ○ 관 · 과장 (인)

○ ○ 소 장 (인)

○ ○ 동 장 (인)